

정 관

(2015.06.25. 19차개정)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임원

제3장 이사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5장 사무부서

제6장 보칙

정 관

1924.03.18. 설립
1981.03.26. 1차 개정
1985.01.23. 2차 개정
1989.03.15. 3차 개정
1993.04.14. 4차 개정
1998.11.18. 5차 개정
1999.12.28. 6차 개정
2000.09.27. 7차 개정
2001.12.11. 8차 개정
2005.05.06. 9차 개정
2005.09.30. 10차 개정
2006.12.21. 11차 개정
2007.08.10. 12차 개정
2007.11.19. 13차 개정
2009.04.13. 14차 개정
2009.06.05. 15차 개정
2010.12.13. 16차 개정
2012.05.29. 17차 개정
2014.05.27. 18차 개정
2015.06.25. 19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69(신문로1가)에 둔다.

② 법인의 분사무소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69 구세군회관 705호
2. 경기지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67 235동 602호(선부동, 수정한양아파트)
3.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서로 162-15(정림동, 한양우성아파트) 126동 603호
4. 충남지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208(쌍용동 쌍용현대3차아파트) 302동 401호

5. 충북지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로26번길 22(개신동, 두산한솔아파트) 101동 704호
6. 전북지부 : 전북 정읍시 송산1길 117-30(송산동)
7.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동길 9(성당동, 두류종합시장상가 201호)
8.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234번길 47(만덕동, 그린코아아파트) 301동 1306호
9. 제주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7길 34(이도이동) 2층
10. 강원지부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66번길 17(석사동)
11. 인천지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76(부평동)
12. 전남지부 : 전남 목포시 동부로5번길 16
13. 울산지부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옥성11길 49-1(학성동)
14. 경남지부 : 경남 진주시 평거로 258번지 19
15. 경북지부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동5길 20
16. 광주지부 : 광주광역시 남구 덕림길 18(월산동)
17. 서해지부 : 충남 서산시 부춘2로 47(읍내동, 동신아파트) 204동 301호
18. 예산지부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18
19. 전주지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교마을길 47(평화동3가)
20. 보령지부 : 충남 보령시 주곡로 50
21. 자선냄비본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69(신문로1가)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기독교선교와 문화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고 모든 필요한 재산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복음전도
2. 기독교교육
3. 사회복지사업
4. 선교를 위한 장학사업
5. 수익사업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
6. 중독인(알콜, 마약, 도박), 재활사업(ARC)
7. 출판물 통한 선교사업
8. 노숙·실직인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9.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10. 기부식품 제공사업
11. 노인사업, 장기요양 사업
12. 기부금품 모집, 배분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선냄비사업
13.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활용품점 운영사업
2. 커피음료 제조 및 판매사업
3. 커피원두 제조 및 유통판매사업
4. 재생산품과 대안무역상품의 유통판매사업
5. 식품제조 가공업 및 판매사업(추가)(2010.12.13. 개정)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상임이사 : 1인
3. 이사 : 7인(이사장과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 2인

제7조(임원의 선임)이사는 구세군국제본영(영국소재) 대장이 아래의 직무에 임명한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 (전자로 된 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령관
2. 서기장관
3. 인사국장
4. 기획국장
5. 업무국장
6. 재무부장
7. 자산부장

제8조(임원의 선임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제7조에 명시한 임원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보선)이사의 결원이 있을 시 구세군국제본영에 상신하여 제7조에 의해 보선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사령관직에 있는 이사로 하며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다만, 상임이사는 서기장관직에 있는 이사가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 (전자로 된 문서를 포함한다)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직무대행)이사장이 유고 궐석시는 서기장관직에 있는 상임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 구성)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정기이사회는 매년 4회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혹은 이사 4명 이상의 요구에 의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단,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시는 사전 통지하여 이사 전원이 출석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이사회는 성원은 이사 5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의사의 결정은 과반수로 하되 가부가 동수일 경우 이사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6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이사회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19조(재산의 구분)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 과 같다.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0조(재산의 관리)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수입금)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22조(회계연도)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예산편성)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4조(계속비)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5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부서

제26조(사무국)

- ①본 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부서를 자산부에 두며 이를 위해 전담직원을 둔다.
- ②사무부직원은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 업무를 처리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법인해산)

-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세군국제본영의 승인을 받아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전자로 된 문서를

포함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28조(정관변경)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구세군 국제본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자로 된 문서를 포함한다)

제29조(규칙제정)본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일로 부터 시행한다.